

『구미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보조금 기준액의 범위를 확대하여 학교교육지원 등 교육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교육경비보조금 기준액의 범위 확대 (안 제3조 제1항)
 - 시세수입액의 1000분의 20 → 시세수입액의 1000분의 30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
- 「시·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교육도시 환경 조성 지원을 강화하고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보조하는 보조금 기준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임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기준액의 범위를 시세 수입액의 「1000분의 20」에서 「1000분의 30」으로 확대 조정하는 것임

○ 조례안 검토결과

- 본 개정 조례안은 '06. 3. 14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교육환경 개선 및 급변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는 교육경비의 확대지원은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
- 그러나 시세 수입액의 「1000분의 20」에 해당되는 교육경비 34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2007년도 예산확보는 지원기준 금액의 62%인 21억원의 예산만을 확보하였음
-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한해도 시행 해 보지 않고, 또한 「1000분의 20」에 해당되는 지원기준 금액의 예산을 확보도 못한 채 보조금 지원 경비를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「1000분의 30」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조정시기 및 조정액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